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10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11월 8일

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)」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,
-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64명(변동없음)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 - 일반직 : 1,217명 → 1,236명(+19명)
 - 6급이하 : 1,129명 → 1,148명(+19명)
 - 기능직 : 284명 → 265명(△19명)
- 정원책정기준 조정
 - 일반직 공무원
 - 6급 : 26% 이내 → 27% 이내(1%상향)
 - 7급 : 30% 이내 → 31% 이내(1%상향)
 - 9급 : 11% 이상 → 9% 이상(2%하향)
 - 기능직 공무원
 - 6급 : 4% 이내 → 5% 이내(1%상향)
 - 7급 : 13% 이내 → 15% 이내(2%상향)
 - 8급 : 19% 이내 → 21% 이내(2%상향)
 - 10급: 31% 이상 → 26% 이상(5%하향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 제2항 제7호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7조 제1항 제6의2호, 부칙 제4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-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작성사 처리지침(행안부예규 제371호)
-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310,943천원 정도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걸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)」이 2011년 8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,
- 중견 실무인력 확충을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은
 - 일반직이 1,217명에서 1,236명으로 19명(6급이하 1,129명에서 1,148명으로) 기능직은 284명에서 265명으로 19명 감하였음.
- 정원채정 기준조정은
 - 일반직 공무원은 6급 26%에서 27%, 7급 30%에서 31%, 9급 11%에서 9%로 조정하였으며,
 - 기능직 공무원은 6급 4%에서 5%, 7급 13%에서 15%, 8급 19%에서 21%, 10급 31%에서 26%로 조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23093호)」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금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20%씩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정책기획 중견 실무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